

부산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4776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임효승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18. 12. 19.

판결 선고 2019. 2. 13.

제 1 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단2531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C 대 156㎡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콘크리트구조물 8㎡를 철거하고, 위 8㎡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16행의 "피고 소유의 2층 건물" 부분을 "피고 소유의 3층(일반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2층 건물이나, 실제 현황은 3층 건물이다) 건물이"로 고치고,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철거를 구하는 별지 도면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 지상 콘크리트구조물 8㎡(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파서 현재의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멘트를 바르고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구조물을 원고가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 F의 부친인 E이 위 C 토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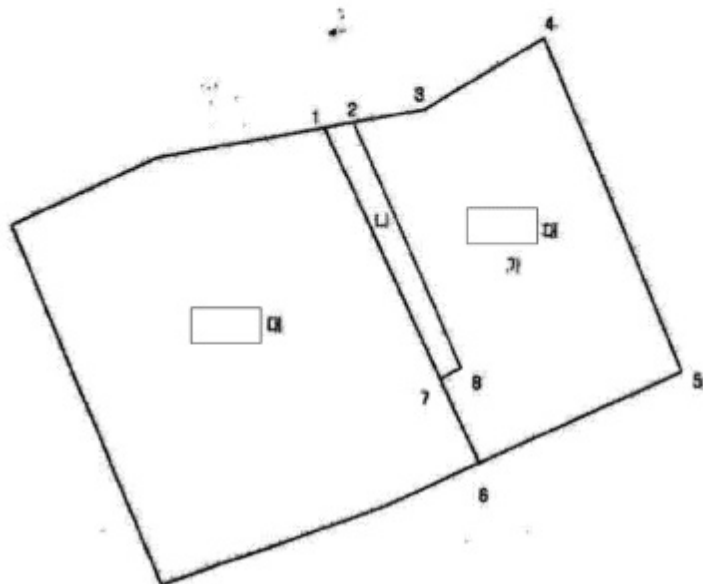
지상 건물(위 3층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의 구건물)을 1973년경 H으로부터 매수하여 1984년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4 부분에 이 사건 구조물과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의 남편 F은 원고가 E의 상속인인 F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7가단84649(본소), 98가단12320(반소) 사건에서, '위 C 토지와 지상 건물(위 3층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의 구건물)은 H이 1971. 12. 7. I로부터 매수하고, 망 E이 1973년경 다시 H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H이 위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별지 '관련소송 도면'의 '토지 및 1층 건물' 중 스, ㅇ, □, ▽, ㅅ을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별지 '관련소송 도면'과 을 제3호증의 1의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관련소송 도면의 4 부분과 이 사건 구조물이 있는 이 사건 4 부분은 같은 부분으로 보인다) 스, ㅇ을 연결한 선상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H이나 E은 위 나) 부분 토지를 위 C 대지의 일부로 생각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고, 1984년 E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초 있던 담장을 헐고 바로 그 자리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H이 점유를 시작한 1971. 12. 7.로부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4 부분 토지 10㎡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와 이 법원 증인 G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F 등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은 F 등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훈, 판사 김문성, 판사 손주희

도면



관련소송 도면

